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66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2. 16.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포함한 6명의 친구와 친한 사이였으나, 2019년 6월부터 피해학생을 포함한 6명이 청구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6명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 나. 피해학생도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기 초부터 5월까지 손으로 때린 점, 허락없이 물건을 사용한 점, 공부를 못한다고 놀린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2019. 7.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7. 31. 청구인 및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 조치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9. 7. 3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평소 친했던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합심하여 평소 친했을 당시 했던 친구들끼리의 장난을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몰아가, 청구인이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되어 받은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의 부도덕한 보복성 신고로 인한 절차의 악용이며 그 결과일 것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학교폭력을 가해하지 않았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학급교체를 결정하였을 만큼 청구인에게는 고통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1점을 부여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피해학생 조치에 어긋난 판단이며, 또한 청구인은 건강했던 교우관계 동안 어떠한 학교폭력을 가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성 2점의 점수는 실제적인 하자로서 청구인에게 부당하다.
- 다.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청구인에게 집단따돌림, 헐담 등이 시

작되자, Wee클래스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선량한 피해자였으며, 이후 신고를 당한 학생들이 청구인에게 보복을 하고자 모두 입을 맞추어 청구인과 장난을 치며 놀았던 행동들로부터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힘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해학생에게 같은 서면사과 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부분은 0점부터 4점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심각하지 않아 ‘낮음’ 정도로 판단하여 1점을 부여한 것이다.
- 나. 학교폭력의 고의성 부분에서는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치위원회에서는 정황상 청구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청구인이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의성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사이가 좋았던 학기 초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손으로 툭툭 건드린 점, 피해학생의 핸드폰 등 물건을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사이가 좋았던 학기 초부터 5월까지 손으로 툭툭 건드린 점, 피해학생의 핸드폰 등 물건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청구인이 손으로 피해학생을 때리고, 허락없이 피해 학생의 물건을 이용하고, 피해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놀렸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참고로 피해학생을 비롯한 6명의 학생이 청구인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을 하여, 청구인이 피해학생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학생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이라고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거는 유일하게 피해학생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